

##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김정호 의원이 추진 중인 「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5. 16.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5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5월 22일(월) 10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5,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chaos96@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의사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5

##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7년 5월 12일

발 의 자 : 김 정 호 의원

##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중 관계 법령 인용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근거조항 수정(안 제7조제1항제5호)
-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 문구 수정(안 제27조제2항)

## 3. 개정조례안 : 불 입

##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 5. 신·구조문대비표 : 불 입

## 6. 기타 참고자료

- 가. 관계법규 : 불 입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광명시”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광명시”를 “시”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부과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외 2명)
소 관	의회사무국
입 안	의원 김정호 (02-2680-658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광명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광명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p> <p>② (생략)</p> <p>제27조(과태료) ① (생략)</p> <p>② 제11조제3항에 위반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 ⑥ (생략)</p>	<p>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시----- ----- ----- 시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부과할 수 있다.</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p>지 방 자 치 단 체 출자·출연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p>	<p><b>제2조(적용 대상 등) ①</b>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p> <p><b>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b>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li> <li>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li> </ol>
<p>지방자치법</p>	<p><b>제41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⑤</b>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7년 5월 11일  
발의의원 : 안성환 의원

## 1. 제안이유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프로그램 면제 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 포함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출산장려 정책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사용료 면제대상에 다자녀 가정 추가(안 제10조제3항제7호)

## 3. 개정조례안 : 불 입

##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 5. 신·구조문대비표 : 불 입

## 6. 기타 참고자료

- 가. 관계법규 : 불 입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으로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구성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안성환 의원 대표발의 (외 2명)
소 관	평생학습원
입 안	의원 안성환 (02-2680-2520)



#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b>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b>	<p>제10조(사용료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p> <p>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 안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 대상 및 횟수, 인원 등 구체적인 면제 범위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li> <li>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li> <li>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li> <li>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li> <li>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li> <li>6. 65세 이상인 노인</li> </ol>
<b>광명시 공영주차장 3자녀 이상 가정 주차요금 할인제 운영 지침</b>	<p>2. 대상</p> <p>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증명표지 발급대상은 <u>3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자녀 중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광명시 거주자로 한다.</u></p> <p>나. 주차요금 할인 대상의 연속성 및 식별 용이를 위해 막내가 만 12세가 되는 연도의 말일까지 할인 대상에 포함한다.</p> <p>다. 증명표지 발급은 한 가정 당 자동차 1대로 한다.</p>
<b>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b>	<p>제2조(정의) 14. <u>3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자녀 중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광명시 거주자</u>  <u>3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자녀 중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광명시 거주자</u></p> <p>※ 이용료 감면율 : 정상가의 50%</p>

관계 법령	내 용
<p>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p>	<p>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통·반장 및 다자녀(2010년 7월 1일 이후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게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공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매월 120리터(단,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li> <li>2. 통·반장 : 세대당 매월 100리터</li> <li>3. <b>다자녀(2010년 7월 1일 이후 셋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 : 셋째아이 이상 1인당 연간 1,200리터(3년간 지급)</b></li> </ol>
<p>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p>	<p>제2조(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 ① 시청 및 광명시민체육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 요금을 징수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b>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청소속 관용자동차</li> <li>2. 직속기관·사업소·동직원 및 타기관의 자동차중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공무수행을 위해 본청 공무원의 광명시민체육관 주차장 이용 포함)</li> <li>3. 시 주관 행사에 동원되는 자동차</li> <li>4. 장애인 자동차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자동차와 언론기관 자동차 중 취재자동차</li> <li>5. 본청 실·과, 시민회관, 광명시민체육관 및 의회에서 방문부서 확인인 [별표 1] 을 받은 자동차</li> <li>6.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도·시의원 자동차</li> <li>7. 무료주차권을 발부받은 자동차</li> <li>8. <b>3자녀이상 다자녀 세대 자동차(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b></li> </ol>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주차요금 징수를 50%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이용자는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경형 자동차</li> <li>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표지부착 자동차</li> </ol>

#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7년 5월 10일

발의의원 : 김익찬 의원

##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광명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표지판(준공석 및 준공판 등)에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

## 2. 주요 내용

- 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안 제4조)
- 다.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안 제5조)

## 3. 제정조례안 : 붙임

##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 5. 기타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시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광명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하고, 광명시 홈페이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 등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하고, 합산 명기 이후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내용 및 방법)**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2명)
소	관	회계과
입	안	김익찬 의원 (02-2680-2538)

[별표]

## 공개대상 공공시설물(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시 설 물
1. 도로 ·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li><li>·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 보안등</li><li>· 벤치, 미디어폴 주민편익시설</li><li>· 교량(육교)</li><li>· 자전거 보관대</li></ul>
2.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 · 정차 단속 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li><li>· 공영주차장</li></ul>
3. 공원 · 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원 안내표지판</li><li>· 벤치, 음수대,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물</li><li>· 미술작품, 조형물 등</li><li>· 체육시설물(테니스장, 축구장, 운동기구 등)</li><li>· 하천시설물</li></ul>
4. 청소 · 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로휴지통,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li><li>· 상징 조형물</li></ul>
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그 밖의 시설물</li></ul>